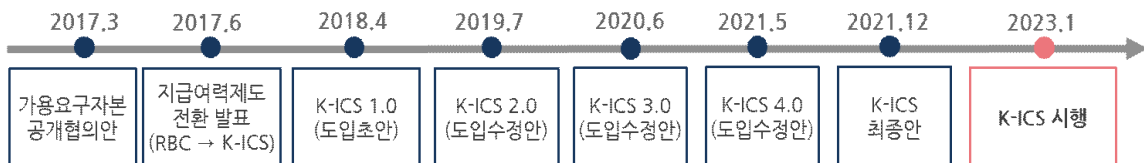


요약

경과조치,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이 포함된 K-ICS 최종안이 2021년 말에 제시됨. 경과조치는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가용자본, 요구자본, 보고 및 공시 등의 방안이 폭넓게 제시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공시를 강화하고 보험회사는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함

- 금융당국은 K-IC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경과조치와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2021년 12월 말에 제시하고,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¹⁾에서 논의함
 - 시가기반의 지급여력제도 전환계획을 2017년 6월에 발표²⁾하였으며 이후 2018년 4월 K-ICS 1.0을 시작으로 매년 도입안이 수정되어 2021년 12월 말 K-ICS 최종안이 발표됨(그림 1) 참조
 - 최종안에는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다양한 경과조치방안과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이 포함됨

<그림 1> K-ICS 도입 경과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RBC제도 및 감독회계”

- 경과조치는 제도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³⁾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가용자본, 요구자본, 보고 및 공시 등 여러 측면에서 제시됨
 - 제도 시행 전 이미 발행된 자본증권은 일정기간(10년) 동안 인정되며 보고 및 공시기한도 1개월씩 더 연장됨
 - 이미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 상향 조건(Step-up)이 존재하더라도 자본증권 한도(총 요구자본의 15%) 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금액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함
 - 후순위채는 제도 시행 전 발행되었다면 보완자본 한도(총 요구자본의 50%)를 초과하더라도 보완자본으로 인정함

1) 1차 회의(2018. 11. 27)부터 경과조치 논의를 시작하여 8차 회의(2021. 9. 27)를 거쳐 9차 회의(2022. 2. 24)에서 구체화됨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6. 28), “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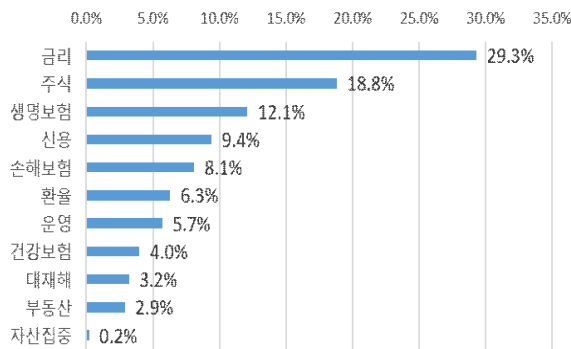
3) 지급여력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산출되며 100% 이상이 되어야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됨

-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제출기한은 현행(분기결산 2개월, 연도결산 3개월)보다 1개월씩 더 연장되는 방안이 제도 시행 초기 3년간 적용됨
- ‘보험부채 증가분’,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신규 도입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선택사항으로 일정 조건 만족 시 10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보험부채 증가분’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K-ICS 기준 보험부채⁴⁾가 현행 보험부채⁵⁾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는 K-ICS 대비 RBC 위험액이 60% 이하인 경우⁶⁾에만 적용가능하며, ‘신규 도입리스크’는 생명(장기)보험리스크 중 RBC에서 측정하지 않은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리스크가 대상임
 -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신규 도입리스크(생명보험)’는 ICS 평가결과를 고려하면 제도 도입 시 요구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참조)

○ 이 중 ‘보험부채 증가분’은 시가 평가로 인해 증가한 보험부채를 경과조치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향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매 2년 또는 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 재평가도 가능함(<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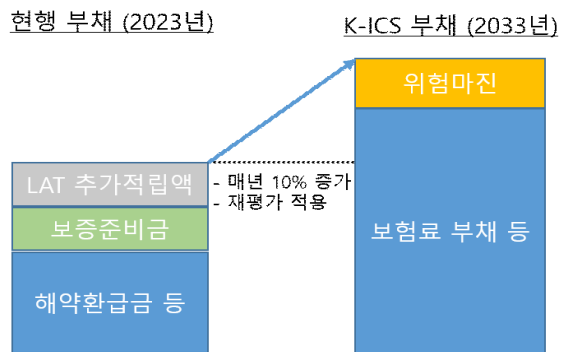
- 현행 보험부채로 평가한 2023년 3월 31일 보유계약을 2024년부터 10%씩 증가시켜 인식하며 2033년에 K-ICS 기준 부채를 100% 인식함
- 향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매 2년마다 또는 평가시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직전 평가와 비교하여 50bp 이상 변동⁷⁾하면 현행 보험부채 항목 중 평가성 준비금인 보증준비금⁸⁾과 LAT 적립액⁹⁾을 대상으로 재평가함

<그림 2> 요구자본의 리스크별 비중(ICS 기준)



자료: ICS(2017), "Risk-based Global ICS Version 1.0"

<그림 3> 경과조치(보험부채 증가분) 도해



자료: 금융감독원(2021),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기준(잠정안)"

4) K-ICS 기준 보험부채 = 보험료부채 + 계약자배당 관련 부채 + 위험마진 - 보험계약대출 - 재보험자산 중 출재보험료부채
 5) 현행 보험부채 = 해약환급금 +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 보증준비금 - 보험계약대출 잔액 - 재보험자산 중 미경과보험료
 6) K-ICS 금리위험액이 100억 원인 경우, RBC 금리위험액이 50억 원이라면 K-ICS 대비 RBC 금리위험액이 60% 이하이므로 적용가능하며 2023년에 위험액의 60%를 적용한 후 매년 4%씩 증가시켜 2033년 이후 100% 적용함
 7) Solvency II는 매 2년마다 또는 리스크프로파일의 중요한 변화(무위험금리 50bp 변동, 지급여력비율의 충격)로 재평가 요건을 제시함
 8) 재산출 보증준비금 = 최초 보증준비금 × 시가평가 보증옵션가치 변동률(재산출시점 시가평가 옵션 및 보증가치 / 최초 산출시점 시가평가 옵션 및 보증가치)
 9) 재산출 LAT적립액 = 책임준비금 차이 금액 × LAT 반영률(최초산출시점 LAT 적립액 / 최초산출시점 책임준비금 차이 금액)

-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보험회사의 원활한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경과조치 적용회사¹⁰⁾는 적정성 검증보고서 제출, 배당성향 제한 등으로 관리되며 보험회사는 조기중단을 신청하거나 감독당국은 적용을 중단할 수 있음
 - 최초 제도 도입 이후 중도신고는 '보험부채 증가분'의 재산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매 2년, 금리 50bp 변동)이거나 경과조치를 적용 중인 보험회사(또는 보험계약)를 인수 및 합병한 회사에 한하여 가능하고 잔여기간만 적용됨
 -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매분기 감독당국에 제출하며 경과조치 중 '보험부채 증가분'은 추가적으로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제출함
 -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보통주 현금배당 및 자사주 순매입 누적액 비율)이 일정 기준¹¹⁾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축소하여 적용함
 - 경과조치 조기 중단을 원하는 회사는 감독당국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적용중단을 통보할 수 있음

- 또한 보험회사의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新지급여력제도)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RBC(舊지급여력제도)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5년간 유예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 되면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받음
 - RBC 비율이 100% 이상이라면 경영개선협약 체결과 매분기별 이행 여부 보고를 통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거나 지급여력비율이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거나 경영개선 협약 불이행 및 미보고가 된다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

- 한편 기관투자자로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와 사회서비스업 진출 장려를 위해 장기보유주식과 의무보유부동산에 대한 위험 평가 기준을 완화함
 - (장기보유주식) 선진시장 상장주식¹²⁾에 대해 평균 보유기간 5년, 장기보유계획(10년) 문서화 등 요건 충족 시 충격 시나리오를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 Solvency II에서도 유사한 제도(장기 주식 투자 22% 적용)를 시행 중이나 EEA 국가만을 대상¹³⁾으로 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시장 상장주식 전체로 확대한 K-ICS와 차이가 있음
 - (의무보유부동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충격시나리오를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 노인장기요양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고 일반 부동산과 달리 처분·임대 등 투자목적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함

- 경과조치는 해외 제도(Solvency II)에서 제시하는 방안과 유사하나 감독의 일관성 및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및 요구자본의 경과조치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음(표 1) 참조

10) 경과조치 적용을 원하는 보험회사는 제도 시행일(2023. 1. 1)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적용을 신고해야 하며, 감독원장은 적합성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함

11) max{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산업 전체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12)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의 적격 증권거래소 및 적격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주식도 포함됨

13) 노건엽 등(2021. 8. 17), 「보험회사의 장기 주식 투자 활성화 방안」, 「KIRI 리포트」

- Solvency II는 경과조치별로 적용기간이 상이하나 K-ICS는 경과조치기간을 대부분 10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감독의 일관성을 도모함
- 신규 도입리스크에서 ‘스프레드리스크¹⁴⁾’는 K-ICS에서는 측정하지 않으며 ‘집중리스크’는 일부 보험회사만 영향이 있어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생명·장기보험리스크의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리스크’를 대상으로 함

〈표 1〉 제도별 경과조치 비교

구분		Solvency II	K-ICS
가용자본	기발행 자본증권 인정 기간	10년	10년
	보험부채 증가분 점진적 반영	16년	10년
요구자본	신규 도입리스크 점진적 반영	4년 (스프레드·집중 리스크)	10년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리스크)
	주식리스크 점진적 반영	7년	10년
	금리리스크 점진적 반영	-	10년
적기시정조치 유예		2년	5년
보고 및 공시 기한 연장		4년	3년

자료: 황인창·조재린(2016),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금융감독원(2021),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기준(잠정안)”

- 경과조치 적용을 원하는 보험회사는 제도 도입 전 자본성 증권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비율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리 및 기존 부채평가 시스템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용자본에 포함되는 기 발행된 자본증권을 10년간 인정하므로 비조건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 발행이 제도 도입 전인 2022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야 하므로 신제도 도입 전까지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고 ‘보험부채 증가분’ 대상계약이 2023년 3월 말 기준이므로 기존 부채평가 시스템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함
-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경과조치방안이 폭넓게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공시를 강화하고 보험회사는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을 활용한 적극적 자본관리가 필요함
 - 경과조치 적용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시장 경쟁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공시를 통해 시장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럽 보험회사는 SFCR(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를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내 은행은 바젤Ⅲ 공시를 사업보고서 및 경영공시와 별도로 제시함
 - 해외사례¹⁵⁾와 유사하게 고금리 계약에 대한 계약재매입 활용, 보험회사 간 계약이전 등 적극적 자본관리가 필요함

14) 회사채 스프레드(회사채 수익률 - 무위험 수익률)의 변화로 발생하는 리스크로 신용리스크가 아닌 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리스크임

15) 노건엽(2020. 2. 6),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CEO Brief